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1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2. 21.

다.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개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¹⁾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7조(벌칙) ①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발견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감염목”이라 하고,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을 “감염목등”으로 약칭하고 있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u>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군 중 9개 시·군(64.3%)에서 감염목등을 화목·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확산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²⁾

【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 】

(단위 : 건)

구분	계	2024년	2023년	2022년
계	14	3	4	7
인위적 확산	9	1	2	6
자연적 확산	5	2	2	1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생태·경관·재산 등의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현행 벌칙 규정은 제재 효과가 낮아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법정형 상향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을 판매·

2)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화목·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발생으로 파악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판매·이용 금지 의무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개정안 벌칙규정 】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제17조 (벌칙)	<u>부실 설계·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u>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u>부실 시공·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u>	
	<u>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u>	
	<u>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u>	<u>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u> ↑(개정) 5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야 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위반행위의 양태 및 죄질의 경중에 부합하고, 현행법상 형량 간 균형 및 다른 행정법규와 형량 상호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병원체나 병해충 감염(우려)물품 등의 판매·반출 시 벌칙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식물방역법」은 수입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체·병해충 감염(우려)물품 등의 판매·반출 시 벌칙에 관한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식물방역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u>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u> 제10조(수입 금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법률명	관련 조문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u>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u>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이 감염목등을 화목·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킨 자 등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단순 이용자는 그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의 처벌 수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현행 벌칙규정이 제재 효과가 낮아 이행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1.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등

□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이란?

-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1mm)의 일종으로 나무 조직내에 수분,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감염 1년 안에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해충
- 가해 대상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감염될 경우 100% 고사하게 됨

□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이란?

- 섭식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소나무에 재선충을 옮기는 곤충으로 현재,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두 종으로 알려짐
- 매개충은 봄에 집중적으로 우화하여 건강한 소나무를 찾아 이동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경로

① (가을철) 매개충 산란

- * 매개충은 약 100개의 알을 고사목에 산란

②③ (겨울~초봄) 매개충이 월동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침투

- * 매개충 번데기로 재선충이 침투·기생

④⑤⑥ (봄~가을철) 매개충이 우화하여 건강한 소나무를 섭식



2. 소나무재선충병 생활사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개충 생활사	고사목 內 서식			고사목 外 이동					고사목 內 서식			
												